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주 의 요 구

제 목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정산시 증빙서류 검정 소홀

기 관 명 광주광역시 동구, 남구, 북구, 광산구

내 용

광주광역시에서는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규산·석회)를 공급함으로써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 및 보전하여 친환경 농업 실천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토양개량제지원사업을 아래 [표]와 같이 추진하고 있다.

[표] 2015년 토양개량제지원사업 추진 현황

근거법령	지원조건	사업예산(단위 : 천원)			주요사업
		계	국고	지방비	
농지법 제21조 (토양의 개량·보전)	국 비 70% 지방비 30%	295,804	207,063	88,741	- 규산 : 유효규산 함량 157ppm미만 - 석회 : 산도(ph) 6.5미만

「농지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환경보전적인 농업경영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토양의 개량·보전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토양의 개량·보전에 관한 시험·연구·조사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농업생산자단체, 농업인, 농업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자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2015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에 따르면 토양개량제 공급업자는 토양개량제를 해당지역 마을 이장에게 인계하고 마을 이장으로부터 토양개량제 공급확인서를 받아 지역농협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마을 이장은 300포(20kg기준) 이상 공급할 경우에는 반드시 현장 확인을 하여야 하며 마을 이장은 공급업자로부터 인수받은 물량을 신청자별 공급대상 면적 및 공급 계획량에 의거 배분하고, 농가별 인수물량과 서명을 받은 인수 및 살포 집계표를 받아 지역농협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관련 시·군·구에서는 분기별 토양개량제 공급계획에 따라 농협중앙회 시군농정지원단과 협의하여 토양개량제를 읍·면·동 및 지역농협을 통하여 농가에 공급하고, 그 결과에 따라 농협중앙회 시·군농정지원단에 대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농협에서 제출한 토양개량제 공급확인서(300포 이상 공급시 현장 확인), 인수 및 살포 집계표(농가별 인수물량과 서명이 모두 확인된 경우에 한함) 등을 확인한 후에 보조금을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시·군·구에서는 사업이 완료되어 보조금을 교부할 경우에는 해당 농협으로부터 마을 이장이 서명한 토양개량제 공급확인서, 인수 및 살포 집계표 등 정산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받아 면밀히 검정을 실시한 후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광주광역시 동구 등 4개 구에서는 토양개량제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농협에서 토양개량제 공급확인서, 인수 및 살포 집계표 등 정산관련 증빙서류 일부가 미흡 하거나 미제출한 상태로 보조금을 청구하였는데도 보조금을

전액 집행하였다.

조치할 사항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남구청장, 북구청장, 광산구청장은

[주의] 앞으로 토양개량제지원 보조금을 집행할 경우에는 정산 시 필요한 공급
확인서, 인수 및 살포 집계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면밀히 검정하여 위
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